

평창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44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3. 6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청소년 기관·단체(법인)에 의해 운영 되도록 추진함에 있어,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동의 받음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

- 평창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 :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
- 추진 필요성
 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상담, 교육·자립지원 등 주요서비스는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기관이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임에 따라,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.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위탁범위 : 평창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
- 사무내용
 -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, 자립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
 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·협력
 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 -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
 -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인 력 : 2명 (센터장 또는 팀장 1, 팀원 1)
 - ※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겸임할 경우, 인력기준에 센터장 미포함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위 치 : 평창읍 종부로 61,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內
- 시설규모 : 연면적 193.43㎡
- 구 조 : 사무실 1, 상담실 5, 교육실 1, 상담대기실 1
 - ※ 상담실, 교육실, 상담대기실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공용

※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기준 (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)

- 입지기준 : 종사자와 청소년의 안전 확보 및 방문 이용에 용이한 곳
- 규 모 : 연면적 150㎡ 이상
- 구조 및 설비 : 사무실, 상담실, 교육실, 상담대기실(휴게실) 각 1개 이상

○ 위 치 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

- 위탁계약체결일 ~ 2026. 7월 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(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)
- 신청자격
 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 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
 -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민간위탁금 90,030천원 (국비 62,401, 군비 27,629)
 - 종사자 인건비, 사업비 및 운영비,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등
- ※ 매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확보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금 결정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다른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
 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, 교육·자립지원 등 주요서비스는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기관이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임
-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- 법률로 정한 청소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위탁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
- 경제적 효율성
 - 기설치된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시설을 공동 사용하여

- 추가 시설설치에 대한 낭비요소를 해소하고,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가능
- 군 직영과 동일한 예산(국고보조금 및 지방비)이 소요되나, 전문 인력 활용과 관리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
-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 -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 기관·단체의 위탁으로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 가능
- 성과 측정의 용이성
 - 인력관리, 발굴 및 연계 실적, 프로그램 운영실적, 예산 및 행정 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 평가로 성과 관리 용이
-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 - 정기적인 지도·점검 실시(연1회 이상) 및 여성가족부 사업수행 적합성 평가(3년 주기)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
-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 - 관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부재로 타지역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고,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신속히 발굴·관리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

자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추진현황(경과)
 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신규설치 신청 : '21. 11월, '22. 3월
 - 2023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예산 확정 : '22. 12. 28.
 - 「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정 계획 : '23. 2. 7.
 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: '23. 5. 26.

○ 관련자료

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현황

• 전체 운영지역 : 221개소 (시·도센터 16, 시·군·구센터 205)

• 강원도 운영지역 : 12개소 (도 센터 1, *시·군센터 11)

* 설치지역 : 강릉, 동해, 삼척, 속초, 원주, 춘천, 태백, 영월, 정선, 철원, 홍천

○ 관련법령

- 청소년 기본법 제49조
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12조

관계법령 발취

□ 청소년 기본법

제49조(청소년복지의 향상)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·태도·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,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, 직업재활훈련,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·신체적·경제적·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, 지원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
3.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·협력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5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6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, 지정기간, 지정절차,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